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하고,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시 합참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20023호 및 법률 제20190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절차 등 마련
- 나.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하는 절차 등 마련
- 다. 방위사업계약심의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
- 라. 기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범죄경력조회)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 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 경찰청, 검찰청 및 군 검찰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 등으로 수사 개시 사실을 인지한 경우
2. 민원, 제보, 신고 등으로 처벌 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관할 경찰청장, 검찰총장, 군 검찰부의 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관할 경찰청장, 검찰총장, 군 검찰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최근 5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조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사람이 속하는 업체 등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⑧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여 자체심의를 거쳐 소요를 결정한다.

제61조의4제4항 중 “체결기준, 계약금액의 조정 및”을 “체결기준,”으로 한다.

제61조의12제7항 중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를 “방위사업계약심의 실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를 “방위사업계약심의 실무위원회”로 한다.

⑧ 방위사업계약심의 실무위원회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위사업청장”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300	300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400	400	400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	500	500
나. 법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2호	300	400	500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범죄경력조회)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 경찰청, 검찰청 및 군 검찰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u> <u>1.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 등으로 수사 개시 사실을 인지한 경우</u> <u>2. 민원, 제보, 신고 등으로 처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u> <u>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은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관할 경찰청장, 검찰총장, 군 검찰부의 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u>

	<u>를 요청받은 관할 경찰청장, 검찰총장, 군 검찰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최근 5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조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 <u>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사람이 속하는 업체 등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u>
제22조(소요결정 절차 등) ① ~ ⑦ (생략) <u><신설></u>	제22조(소요결정 절차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여 자체심의를 거쳐 소요를 결정한다.</u> <u>⑨ ----- 제8항-----</u> ----- ----- -----.
<u>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u> 제61조의4(개산계약의 정산 등) ① ~ ③ (생략)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산계약의 체</u>	제61조의4(개산계약의 정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 체</u>

결기준,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개
산계약의 세부적인 정산기준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
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12(방위사업계약심의위
원회) ① ~ ⑥ (생 략)

⑦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
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
하고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
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 방위
사업계약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
다.

<신 설>

⑧ (생 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계약심
의위원회 및 방위사업계약실무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
업청장이 정한다.

결기준, -----

-----.

제61조의12(방위사업계약심의위
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방위사
업계약심의 실무위원회-----
--.

⑧ 방위사업계약심의 실무위원
회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에서 위임받은 사항, 국방부장
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
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⑩ -----

----- 방위사업계약심의
실무위원회-----

-----.

제7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방위사업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
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
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1. · 2. (생략)

② (생략)

제7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

1. 법 제6조의2에 따른 방산업
체 지정취소 확인 등에 관한
사무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2) 748 - 5613